

 1인가구 생활용품
빌려드림 운영규정

제1조(이용자)

- ① 도봉구 1인가구지원 물품대여 이용자는 도봉구 거주하는 1인가구로 한다.
 - 주민등록 주소지가 도봉구이면서 동거인 포함하여 주민등록등본상 1인가구 세대주
 - 물품대여 시 1인가구 증빙서류(주민등록등본) 제출 혹은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작성
 - 제출된 1인가구 증빙서류 및 가입신청서 등은 1년 단위로 파쇄

제2조(이용방법 및 절차)

- ① 물품을 대여하고자 하는 이용자는 도봉구청 홈페이지에서 사전예약(최소1~2일 전, 최대 7일 전)을 하고 예약확정 승인 문자 수신 후 신분증(필요시 등본)을 지참하고, 대여 시에 신분증을 맡겨야 한다.
- ② 타인 명의로 대여 신청을 할 수 없다.

제3조(대여)

- ① 제1조의 자격요건에 해당하고 제2조 절차를 거친 경우, 요청한 물품을 대여할 수 있다.
- ② 1인당 최대 2가지 물품 대여 가능
- ③ 물품 대여자가 기존 대여품 반납 전 추가로 대여 신청을 하는 경우 기존 대여물품을 반납한 후 새로운 물품을 대여할 수 있다.
- ④ 동일한 물건의 연속 대여는 불가하며 반납 후 최소 14일 이후에 대여할 수 있다.

제4조(대여 기간)

- ① 물품 대여는 1회 14일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. 다만 대여기간 연장은 불가하다.

제5조(반납)

- ① 대여한 물품은 신청 시 기재한 기간 내에 반납하여야 하며, 필요한 경우 대여 기간 중이라도 도봉구 1인가구 물품대여 담당자가 반납을 요구할 수 있다.
- ② 이용 후 반납 시에는 물품의 변형없이 청소/정리/세척/건조하여 원래의 상태로 반납하여야 한다.
- ③ 타 지역(도봉구 외)으로 전출할 경우에는 이미 대여한 물품을 반드시 반납해야 한다.

제6조(연체)

- ① 대여한 물품은 기한 내 반납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전에 반납일을 연장하여야 한다.
- ② 대여를 1회 연체할 경우 이용이 1개월 동안 제한된다.
- ③ 2회 연체할 경우 2개월 동안 대여를 금지한다.
- ④ 3회 연체할 경우 3개월 동안 대여를 금지한다.

제7조(이용자 준수사항)

- ① 이용자는 대여 물품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.
- ② 이용자가 제1항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대여 물품을 분실하거나 파손·훼손한 때에는 지체없이 원상복구 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
- ③ 이용자는 대여 물품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.

- ④ 이용자는 아래 사항의 경우 경고를 받을 수 있으며 아래 사항을 2회 이상 위반할 경우 영구적으로 물품 대여서비스 이용이 불가하다.
- 대여 및 반납 시간을 어기거나 협의 없이 연체했을 경우
 - 대여 예약 후 당일 방문하지 않을 경우
 - 대여 물품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경우
 - 대여 승인 후 신청 기재 사실이 허위로 밝혀졌을 경우
 - 반납 시 원상태 반납의무를 다 하지 않았을 경우

제8조(배상책임)

- ① 이용기간 중 이용자 및 제3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인적·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민·형사상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.
- ② 대여 물품 훼손 또는 파손, 분실 시에는 아래 규정을 준수해 변상해야 한다.
- 훼손 또는 파손, 분실 시 규정내용

물품 구매 시기	구 분		규정내용(부과 비율)	비고
	완전 파손시(수리불가)	부분 파손시(수리가능)		
1년미만	완전 파손시(수리불가)	수리비용 전액(100%)	분실 규정 동일	
	부분 파손시(수리가능)	수리비용 전액(100%)		
1년이상 2년미만	완전 파손시(수리불가)	물품구입가액 90%		
	부분 파손시(수리가능)	수리비용 90%		
2년이상 3년미만	완전 파손시(수리불가)	물품구입가액 80%		
	부분 파손시(수리가능)	수리비용 80%		
3년이상 4년미만	완전 파손시(수리불가)	물품구입가액 70%		
	부분 파손시(수리가능)	수리비용 70%		
4년이상 5년미만	완전 파손시(수리불가)	물품구입가액 60%		
	부분 파손시(수리가능)	수리비용 60%		
5년이상 6년미만	완전 파손시(수리불가)	물품구입가액 50%		
	부분 파손시(수리가능)	수리비용 50%		
6년이상 7년미만	완전 파손시(수리불가)	물품구입가액 40%		
	부분 파손시(수리가능)	수리비용 40%		
7년이상 8년미만	완전 파손시(수리불가)	물품구입가액 30%		
	부분 파손시(수리가능)	수리비용 30%		
8년이상	완전 파손시(수리불가)	무상		
	부분 파손시(수리가능)	무상		

- ③ 반납하지 않은 물품 등에 대해서는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.

제9조(이용 자격 박탈)

- ① 무단 연체한 경우
- ② 대여 물품을 분실하고 변상하지 않을 경우
- ③ 기타 안전상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위 규정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.

년 월 일

성명 : (서명 또는 인)

도봉구청장 귀하